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0795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6. 30.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23,260,7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3

가. 원고는 1982. 11. 4. [redacted]구 B 대 208.5㎡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0. 5.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원고의 처 C이 소유한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71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232,607,835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지방소득세 23,260,783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적법 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종속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별개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와 그에 관한 지방소득세는 세목과 처분청이 다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임차인인 E이 교사로서 수업에 필요한 교안을 만드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등 업무용으로 이를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가스레인지, 세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3

기 등의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부수적인 숙식을 위한 편의시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양도소득세 본세의 세액과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관한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포함 여부와 가산세의 각 종류별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누락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원고의 처는 과세관청에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히 납부했으므로,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납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상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화장실, 에어컨, 가스레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3

지,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실, E은 2010. 2.경 원고의 처 C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2012. 1.경까지 사실상 주거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로서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소득세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고, 과세대상 물건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등 참조).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고지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3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세금부과처분을 할 경우 사용하는 납세고지서의 양식에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과 납부서(수납기관용)가 표시된 면 외에 세액산출명세서와 가산세 등 산출근거가 표시된 면이 따로 있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과 납부서(수납기관용)는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 양식 중 일부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양도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산출세액과 예상 고지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원고가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중납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된 C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물건 및 과세근거 등을 달리하므로 이를 이중납세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3

판사 김대원